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10 발의연월일: 2024. 7. 11.

발 의 자 : 추경호 · 강대식 · 강명구

강민국 · 강선영 · 강승규

고동진 • 곽규택 • 구자근

권성동 • 권영세 • 권영진

김 건 · 김기웅 · 김기현

김대식 · 김도읍 · 김미애

김민전 · 김상욱 · 김상훈

김석기 · 김선교 · 김성원

김소희 · 김승수 · 김예지

김용태 · 김위상 · 김은혜

김장겸 • 김재섭 • 김정재

김종양 · 김태호 · 김형동

김희정 • 나경워 • 박대출

박덕흠 • 박상웅 • 박성민

박성훈 • 박수민 • 박수영

박정하 • 박정훈 • 박준태

박충권 • 박형수 • 배준영

배혂진 • 백종헌 • 서명옥

서범수 · 서일준 · 서지영

서천호 · 성일종 · 송석준

송언석 · 신동욱 · 신성범

안상훈 • 안철수 • 엄태영

우재준 · 유상범 · 유영하 유용원 · 윤상현 · 윤영석 윤재옥 · 윤한홍 · 이달희 이만희 · 이상휘 · 이성권 이양수 · 이인선 · 이종배 이종욱 · 이철규 · 이헌승 인요한 · 임이자 · 임종득 장동혁 · 정동만 · 정성국 정연욱 · 정점식 · 정희용 조경태 · 조배숙 · 조승환 조연희 · 조정훈 · 조지연 주진우 · 주호영 · 진종오 최보윤 · 최수진 · 최은석 최형두 · 한기호 · 한지아 의원(108인)

## 제안이유

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,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, 노동, 복지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,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,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인구·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·조 정하기 위하여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함(안 제12 조제2항, 제19조제3항·제5항 및 제23조 개정).
- 나.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 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인 정무장 관을 신설함(안 제20조 신설).
- 다.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, 인구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·평가를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(안 제29조 신설).

### 법률 제 호

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 본문 중 "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"을 "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"으로, "제29조제2항·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"을 "제31조제2항·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"제29조제2항·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"을 "제31조제2항·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10조 중 "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"을 "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, 정무장관 밑의 차관"으로, "제29조제2항·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"을 "제31조제2항·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, "제26조제 1항"을 "제27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, "교육·사회"를 "인구·사회"로 한다.

제20조부터 제22조까지, 제22조의3, 제23조,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, 제24조, 제25조,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하고, 제20조

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정무장관) 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 명의 국무위원(이하 "정무장관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- ② 정무장관 밑에 차관 1명을 두되.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.
- ③ 정무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

제23조(종전의 제22조) 중 "교육부장관"을 "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, "제26조제1항"을 "제27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26조(종전의 제25조) 앞의 "제4장 행정각부"를 삭제한다.

제27조(종전의 제26조)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제4장 행정각부

제27조(종전의 제26조)제1항제2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인구전략기획부

제28조(종전의 제27조)제1항 중 "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"을 "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(인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(인구전략기획부) 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에 관한 중장기

국가발전전략수립, 인구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·평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② 인구전략기획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.

제30조(종전의 제28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0조(교육부)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, 영·유아 보육·교육, 학교교육·평생교육,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직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

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.

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9조 제1항에 관한 사무	인구전략기획부장관
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9조 제1항에 관한 사무	인구전략기획부장관

- ②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(정무직은 제외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인구전략기획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 다.
- ③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(정무직은 제외한다)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인구전략기획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

다.

-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 령으로 본다.
- 제3조(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)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 기관이 행한 고시·행정처분,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 에 대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에 대한 행위로 본다.
- 제4조(인사청문에 관한 특례)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대통령은 국무 위원 후보자(정무장관 및 인구전략기획부장관)에 대하여 국회에 인 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11명"을 "12명"으로 하고, 같은 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차관"을 "기획재정부차관·인구전략기획부차관"으로 한다.

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, 인구전략

기획부장관"으로 한다.

③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차관"을 "기획재정부차관, 인구전략기획부차관"으로 한다.

④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·인구전략 기획부장관"으로 한다.

⑤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, 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 한다.

⑥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, 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의 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"을 "기획재정부의 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, 인구전략기획부차관"으로 한다.

⑦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1항 중 "39명"을 "40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기획 재정부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, 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 한다.

⑧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.

제29조제3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·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 한다.

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20명"을 "2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·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 한다.

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1호 중 "교육부"를 "인구전략기획부, 교육부"로 한다.

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·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 한다.

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차관"을 "기획재정부차관, 인구전략기획부차관"으로 한다.

③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3항제1호 중 "교육부차관"을 "인구전략기획부차관"으로 한다.

(4)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 한다.

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·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 한다.

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, 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 한다.

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부장관"을 "인구전략기획부장 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 18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1. 교육부장관

(B)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부장관"을 "인구전략기획부장 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부장관"을 "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 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항제9호"를 "제2항제10호"로 한다.

#### 1. 교육부장관

⑩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후단 중 "제4항제15호 및 제16호"를 "제4항제16호 및 제17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4항제15호 및 제16호"를 "제4항제16호 및 제17호"로 한다.

#### 2. 인구전략기획부차관

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"을 "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, 인구전략기획부차관"으로 한다.

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3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, 인구전

략기획부장관"으로 한다.

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차관"을 "기획재정부차관·인구 전략기획부차관"으로 한다.

②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·인구전략기획부장관"으로 한다.

제6조(조직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,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,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된 행정기관,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,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	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
직 등) ① ~ ④ (생 략)	직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	⑤
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	
관과 차관(제34조제3항 및 제3	<u>제36조제3항 및 제40</u>
<u>8조제2항</u> 에 따라 행정안전부	조제2항
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	
부장을 포함한다)을 직접 보좌	
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	
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에는 그	
기관의 장, 차관( <u>제29조제2항 ·</u>	<u>제31조제2항·제36조</u>
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	<u>제3항 및 제40조제2항</u>
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• 행	
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	
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)ㆍ차	
장・실장・국장 밑에 정책의	
기획, 계획의 입안, 연구·조	
사, 심사・평가 및 홍보 등을	
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	
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
에 따라 둘 수 있다. 다만, 과	
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	
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	
다.	

- ⑥ ~ ⑩ (생 략) 제7조(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 저한) ① (생 략)
  - ② 차관(제29조제2항·제34조 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행정안전 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차장(국무 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 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・감 독하며, 그 기관의 장이 사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차 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 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~ ⑤ (생 략)
- 제10조(정부위원) <u>국무조정실의</u> 2 <u>실장 및 차장</u>, 부·처·청의 처장·차관·청장·차장·실장 ·국장 및 차관보와 <u>제29조제2</u>

⑥ ~ ⑩ (현행과 같음)
제7조(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
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제31조제2항·제36조</u>
제3항 및 제40조제2항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정부위원) <u>국무조정실의</u>
실장 및 차장, 정무장관 밑의
<u> 차관</u>
제31조제2항

항·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 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 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 이 된다.

제12조(국무회의) ① (생 략)

-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,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 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④ (생 략)

제19조(부총리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.
- ④ (생 략)
-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·사회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

· 제36소제3양 및 제40소제2양
제12조(국무회의) ① (현행과 같
<u>♦</u>
②
인구전략기획부장관-
제27조제1
<u>ŏ</u> }
,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(부총리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③
인구전략기획부장관
④ (현행과 같음)
⑤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인
<u>구·사회</u>

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을 총괄·조정한다.

<신 설>

제20조 · 제21조 (생 략)

제22조(국무총리의 직무대행) 국 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, 교 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, 국무 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, 지명 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

제20조(정무장관) ① 대통령이
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
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
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
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
(이하 "정무장관"이라 한다)을
<u>둘 수 있다.</u>
② 정무장관 밑에 차관 1명을
두되,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.
③ 정무장관을 보좌하기 위하
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
<u>제21조</u> · <u>제22조</u> (현행 제20조 및
제21조와 같음)
제23조(국무총리의 직무대행)
인구전
략기획부장관

-----제27조제1항

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2조의3 · 제23조 (생략)

제4장 행정각부

제25조 (생략)

<신 설>

- <u>제26조</u>(행정각부)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.
  - 1. (생략)

<u><신</u> 설>

2. ~ 19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제27조(기획재정부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,경제·재정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,예산·기금의편성·집행·성과관리,화폐·외환·국고·정부회계·내국세제·관세·국제금융,공공기관관리,경제협력·국유재산·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② ~ ⑩ (생 략)

<u>제24조</u> • <u>제25조</u> (현행 제22조의3
・제23조와 같음)
<u>&lt;삭 제&gt;</u>
<u>제26조</u> (현행 제25조와 같음)
제4장 행정각부
<u>제27조</u> (행정각부) ①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. 인구전략기획부
$3. \sim 20.$ (현행 제2호부터 제1
9호까지와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<u>제28조</u> (기획재정부) ①
중장기 국가발전전략
수립(인구에 관한 사항은 제외
<u>한다)</u>
·.
② ~ ⑩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28조(교육부) ① 교육부장관은 제30조(교육부) 교육부장관은 인 인적자원개발정책, 영•유아 보육 · 교육, 학교교육 · 평생교 육,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.

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.

제29조 ~ 제45조 (생 략)

제29조(인구전략기획부) ① 인구 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, 인 구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· 평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② 인구전략기획부에 차관보 1 명을 둘 수 있다.

적자원개발정책, 영·유아 보 <u>육·교육, 학교교육·평생교육,</u>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제31조 ~ 제47조 (현행 제29조부 터 제45조까지와 같음)